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박 주 희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China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박 주 희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지도교수 김 석 민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박 주 희

박주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의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재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기술무역장벽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기술무역장벽의 개념	5
1. 기술무역장벽의 정의	5
2. 기술무역장벽의 유형 및 특성	6
제2절 WTO의 TBT 협정	10
1. WTO/TBT 협정의 배경	10
2.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11
제3절 한·중 FTA/TBT 협정	16
1. 한·중 FTA/TBT 협정의 주요내용	16
2. 한·중 FTA/TBT 협정 평가	19
제3장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현황 분석	22
제1절 중국의 TBT 정책방향 및 전망	22
1. 중국의 TBT 정책 방향	22
2. 중국의 TBT 정책 전망	24

제2절 중국의 WTO/TBT 통보 현황	26
1. WTO회원국의 TBT 동향 분석	26
2. 중국의 WTO/TBT 동향 분석	31
제3절 중국의 TBT 관련 제도 및 사례	35
1. 중국의 TBT 관련 주요 제도	35
2. 중국의 TBT 관련 주요 사례	39
제4장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46
제1절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	46
1.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	46
2.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	46
3.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47
4. 투명성의 부족	48
제2절 한·중 양국간 TBT 쟁점 및 대응사례	50
1. 한·중 양국간 TBT 쟁점	50
2. 중국 TBT 관련 한국의 대응사례	54
제3절 한국의 중국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58
1.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58
2. 투명성 제고관련	60
3. 중국 TBT 관련 정보의 수집관련	61
4.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관련	62
5. 중국 기술규제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62
제5장 결 론	64
《참고문헌》	66

【표 목 차】

<표 2-1> WTO/TBT 통보 목적별 현황	14
<표 2-2> 한·중 FTA/TBT 협정문 주요 내용	16
<표 3-1> 연도별 신규 및 계속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30
<표 3-2> 중국의 연도별 WTO/TBT 통보문 건수	32
<표 3-3> 중국 TBT 품목별 비율	33

【그림 목차】

<그림 3-1>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2014년)	27
<그림 3-2>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2014년)	27
<그림 3-3> 2014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2014년)	28
<그림 3-4> 신규 TBT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2014년)	29
<그림 3-5> 전세계와 중국의 TBT 품목별 비율 비교	34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China

Park, Ju-Hee

Advisor : Prof. Kim, Seog-Min,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hines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rresponding strategy of South Korea.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substantially give what effect the Chinese TBT Korean trade. Technical regulations is the country to the other party, in order to export their own products, so you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regulation of the country, it will act as a typical TBT.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it is necessary, such as the following efforts. First, it may analyze the content and the effect of the technical provisions of Chinese trade takes place.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expansion and aggressive response posture of recognition of related companies and industries. Building a support system is required to measure the standard of expansion and ministries dimension country for the development of high precision measurement technology to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re is no failure in the export of Korean companies technical regulations,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and to quickly understand the Chinese market and overseas trend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ddition, through the training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s well as political support to be abl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along with the research expenses paid expansion, in order to procure the education system, the continued support for the university Mus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WTO, APEC 등 다자간 무역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과 FTA와 같은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을 점차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각국은 관세를 수단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가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이다. 기술규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규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국제통상에 있어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국제통상에 있어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로인해 발생하는 기술무역장벽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계량화의 어려움과 기술적·법률적·경제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복잡성, 규제 해석에 대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급격히 증가하는 기술무역장벽이 과연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급증하고 있는 수입제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준과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WTO/TBT 협정과 한·중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중국의 TBT 정책, 제도 및 주요사례를 토대로 하여 중국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 TBT의 문제점, 한·중 양국간의 TBT 쟁점 및 대응사례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 중국 기술무역장벽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중심으로 의존하였다. 본 연구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 홈페이지공고 등을 분석해 중국의 기술무역장벽과 대중국 교역 시 한국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수행은 아래의 방법에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기술무역장벽의 정의, 특성, 유형 및 한·중 FTA TBT협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정책방향과 주요 제도를 분석하며,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TBT 적용 및 대응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제4장에서는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논문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중국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의 한 부분으로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주희(2016)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바,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중 수출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정책변화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점과 사례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한·중 기술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체결되고 있는 최근 약정들을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소 한계가 따른다.

하태정 외(2015)¹⁾,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들과의 지속적인 교역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BT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에 기초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FTA TBT 협정 관련 동향과 TBT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그리고 WTO 및 FTA 환경변화속에서 TBT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WTO 및 주요 FTA 사례에서 TBT 관련 규정과 협상 동향과 주요 특성을 분석, 다음으로 한-미 FTA와 더불어 국내 산업 및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경우를 대상으로 기술규제 관점에서 TBT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FTA TBT 협상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숙 (2015)²⁾, 연구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WTO 특정무역현안의 분석을 통해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법제

1)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p. 72-94.

를 이해하고 WTO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¹⁾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규정과 표준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이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장용민 외(2014)³⁾, 연구는 1995~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TBT가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TBT의 무역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분류하여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고찰하였다.

서민교 외(2012)⁴⁾,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며,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3) 장용민, 서정민 (20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pp. 1-33.

4) 서민교, 김희준 (2012),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 491-516.

제2장 기술무역장벽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기술무역장벽의 개념

1. 기술무역장벽의 정의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또는 표준(Standards)이란 정책당국 또는 민간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을 설정하여 동 기술규격을 근거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장벽은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며,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⁵⁾

결론적으로 TBT는 그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계량화의 어려움과 기술적·법률적·경제적 분석이 동시에 수반되어야하는 복잡성, 규제 해석에 대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한 수단이다.⁶⁾ 이에 따라 WTO 회원국 간에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TBT 협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http://www.knowtbt.kr/Guide/TBTOutLine.aspx>

6) 장용민, 서정민 (20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p. 2.

이는 특정 국가가 위와 같은 제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까다롭고 복잡하게 할 경우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그 대상국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비하거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술무역장벽의 유형 및 특성

가. 기술무역장벽의 유형

기술무역장벽의 유형은 크게 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및 라벨링(label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이다. 표준은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제성을 가지므로 기술 장벽처럼 되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 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규정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보호 등을 위한 것이나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함으로써 기술 장벽이 되는 것이다. TBT 협정문에서 표준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를 말하며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인 아닌 문서를 말한다.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

둘째,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이다. 이는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을 말한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해 TBT 협정문에서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의 종류로는 검사(inspection),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승인(approval), 검증(verification) 등을 말한다. 검사는 사실을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인증은 어떤 행위, 문서의 성립이나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이 증명하는 일이다. 인정은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승인은 정당하거나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검정은 검사하여 그 자격을 정하는 일이다.

셋째, 라벨링(labeling)이다. 라벨링이란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기준을 말한다.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등을 구성되며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등이 작성된다.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등을 제공한다. 라벨링이 장벽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생산방법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특정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라벨링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자동차 라벨링제도로써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화율 표시를 의무화 하여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⁷⁾

나. 기술무역장벽의 특성

첫째, 기술무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기술무역장벽은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모든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술무역장벽은 주로 특정의 첨단제품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설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실상 교역대상이 되는 대부분 제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TBT사무국에 첨단제품이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가 아니라 음료 및 가공식품, 소비재 공산품, 1차생산품, 원재료 등 기존의 제품 및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p. 4-5.

셋째, 기술무역장벽은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최종적인 상태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공정 및 제조방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TBT협정 부속서1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련공정과 생산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장하여 명시하고 있다.

넷째, 기술무역장벽은 주로 기술규격 등 제품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TBT협정은 회원국들이 기술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들로서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규제가 협정에 제시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는 잠재적인 분쟁요소를 안고 있다.

다섯째, TBT협정상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는 강제적인 요건으로서 기술규정 등과는 달리 그러한 규제에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기술규제와 유사하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술규제는 그 성격상 기술규격, 등과 같이 명시적 기준을 가진 것으로 실제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나 수량제한 등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기술규제는 전통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국경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정, 선적 전 및 수입국에서의 유통과정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접근이 이루어져 사용 및 폐기되기 전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간 또는 서로 다른 품목 간에 일관되게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곱째, 기술무역장벽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뿐만 아니라 특

정 품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기인하며, 점차 무역기술 장벽으로서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은 기술규제 관련 전체 통보문의 구성은 물론 위원회의 다자간 논의에서도 상대적으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통하여서도 확인될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기술규제는 상당기간 그 수준이 고정되어 있으며 점차완화 또는 철폐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세장벽 및 수량제한 등과는 달리 기술규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되고 강화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규제의 이러한 동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의 완화와 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아홉째, 기술규제를 설정하는 주체는 주로 각국의 정부이고, 기술개발 및 상품생산의 주체는 대부분 개별 민간 기업이며, 외국의 기술 장벽은 실제 시장접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⁸⁾

8) 남상열 (2005), “무역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정책연구 0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8-32.

제2절 WTO의 TBT 협정

1. WTO/TBT 협정의 배경

1930년대 서방국가들이 높은 무역장벽을 낮추려고 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 1947년 GATT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관세장벽 인하가 협상의 주요 내용이었으나 아무리 관세장벽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비관세장벽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약국들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GATT협정의 대부분은 비관세장벽의 강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제도 마련에 상당 부분이 할애되었다. 예를 들어 GATT 제 I 조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제 III 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제 X 조의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은 국내 제반의 무역관련 정책과 제도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XX 조는 예외로서 인정되는 국내정책을 다루고 있다.⁹⁾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관심의 고조로 국가들은 기술표준정책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0년대에 진행되었던 동경라운드(1973-1979)에서는 TBT문제의 중대성 및 국제적 규범의 부재를 인지하여 GATT협정의 일부 조항들로 운용되던 TBT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규제수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기술장벽에 관한 일명 ‘표준협약(Standard Code)’이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PTA)으로 체결되었고, 총 38개국의 체약국이 가입하였다.

1980년부터 발효된 표준협약은 동경라운드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적 한계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GATT UR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표준협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9) 1947년 GATT협정은 TBT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장벽들과 동일한 규제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WTO/GATT제도상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인 비관세장벽에 적용되던 규정과 GATT 제 III 조의 내국민대우 조항, GATT 제 XI 조의 수량제한금지 조항, GATT 제 XX 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이 대표적이다.

Trade ; TBT Agreement)’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술규정과 표준은 일반적인 기술 규정 및 표준과 별도로 고려되어 WTO의 정부조달협정(GPS)에서 규제되고 있다. 동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가입한 체약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대부분의 무역장벽을 구성하고 국제통상에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도 WTO에서는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에 대한 서비스협정(GATS)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TBT와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에는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일반적인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¹⁰⁾

2.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가. WTO/TBT 협정의 개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 이래 TBT가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 과제로 부상되게 된다. 이에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하고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사실상 강제력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하게 된다.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WTO협정의 부속서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어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성이 부여된 협정이 완성됨으로써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WTO/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까지 확대하였으며,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종전 권고 수준에서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로 더욱 강력한 체제로 전환되었다.

10) TBT협정에는 GATT조항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 판례에서는 GATT조항에 대해 WTO의 부속협정들이 누적적으로 적용됨이 확인되고 있다.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이 해당된다.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¹¹⁾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와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한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나.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WTO TBT협정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TBT로 인한 무역제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차별적원칙, 최소한의 무역제한원칙, 정보교류, 국제표준화, 상호인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위해 기술지원과 특별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TBT 협정은 전문, 협정상용어 및 정의에 관한 규정들(제1조와 부속서 1),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규정들(제2조-제4조, 부속서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규정들(제5조-제9조), 정보교류와 개도국 기술지원에 관한 규정들(제10조-제12조), 그리고 TBT위원회, 분쟁해결, 이행 등 협정 운용에 관한 규정들(제13조-제15조, 부속서 2)로 이루어진다.

WTO/TBT 협정 전문에서는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 제도 등이 생산성 향상 및 국제 무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의

11)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무사항으로 담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수출품의 품질,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의 평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제품의 의도된 최종용도 등의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고 협정의 일반 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 원칙 준수는 물론 정당한 목적달성에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무역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BT협정의 적용 주체는 기본적으로 WTO회원국 정부이며, 회원국의 중앙정부는 TBT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앙정부 기관에 못지않게 지방정부기관과 민간 표준화기관이 활발하게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TBT협정상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대한 법률적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TBT협정의 적용 대상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이다. 첫째, 기술규정이다. 협정상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규정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찍인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¹²⁾

둘째, 표준이다. 표준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로 정의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¹³⁾

셋째, 적합성평가이다. 적합성평가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된다.¹⁴⁾

12) TBT협정 부속서 1.1.
 13) TBT협정 부속서 1.2.
 14) TBT협정 부속서 1.3.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TBT 협정이 적용된다.¹⁵⁾ 그러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조달협정에서,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검역과 관련된 사항은 위생검역협정(SPS협정)에서 다룬다.¹⁶⁾

다. TBT 통보문의 목적

통보문에서 밝힌 TBT의 목적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렇게 규제 주체의 주관이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 한다. WTO의 기술규정 통보 목적을 분류해보면 주관적 혹은 객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 기준)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보호, 환경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보호,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은 적정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규제 주체의 주관이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준다. (객관적 기준) 이와 달리 품질요건, 소비자 정보제공 및 라벨링, 국제표준과의 조화, 국내법과의 일치 등은 규제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여 보다 객관적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

주관적 목적에서 통보된 TBT가 전체 TBT 통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의 목적이 전체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¹⁷⁾

<표 2-1> WTO/TBT 통보 목적별 현황

TBT 통보 목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818	1032	886	782	1,023	978
환경보호*	211	180	183	188	253	282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283	410	264	253	211	241
품질요건**	50	226	198	154	238	241

15) TBT협정 1.3조.

16) TBT협정 1.4조, 제1.5조.

17) 이혜연, 제현정, 서은영 (2014), “기술규제장벽 넘어 수출길 닦아야: 최근 중국, 미국, EU의 기술규제동향,” 「Trade Focus」, Vol. 13, No. 4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 5.

소비자 정보제공 및 라벨링**	60	42	78	112	81	82
무역장벽해소**	23	98	59	41	39	49
국제표준과의 조화**	27	49	39	44	51	43
국내법과의 일치**	109	86	53	32	30	32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59	56	56	22	25	19
무역원활화**	23	24	88	15	24	11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가*	0	34	10	7	5	7
국가안보*	1	8	6	15	0	3
미규정	0	6	28	1	4	3
기타	0	0	0	23	9	0
합계	1,644	2,251	1,948	1,689	1,993	1,991
주관적 목적*	1,371 (82.4)	1,678 (74.5)	1,389 (71.3)	1,245 (73.7)	1,512 (75.9)	1,520 (76.3)
객관적 목적**	292 (17.5)	525 (23.3)	515 (26.4)	398 (23.6)	463 (23.3)	458 (23.0)

주1: *은 부과주제의 주관성이 규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TBT 통보 목적 분류를 나타내고, **은 국제표준이나 규범 등 통보의 목적이 비교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나타냄

주2: 하나의 TBT가 통보되었다라도 이에 따른 목적을 2가지 이상 표기한 경우 중복 집계하여 앞에서 제시된 'TBT 통보 건수 현황'에 나타난 총 통보건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자료: WTO 연도별 TBT 리뷰.

제3절 한·중 FTA/TBT 협정

1. 한·중 FTA/TBT 협정의 주요내용

한·중 FTA TBT 협정문은 다음 <표 2-2>와 같이 목적,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을 포함하는 총 15개 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양국은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무역비용 감소 등 양 국간 무역 촉진과 더불어 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TBT 협정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범위는 양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preparation), 채택(adoption) 및 적용(application) 과정을 포함하며, WTO TBT 협정에 근거하여 이행된다.

<표 2-2> 한·중 FTA/TBT 협정문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1조	목적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기술장벽 분야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강화, 교역비용 감소 및 양국간 상호무역 촉진 양국간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2조	적용 범위 및 정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 지방정부의 TBT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 모두 적용
3조	TBT 협정의 확인	WTO TBT 협정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FTA TBT 협정의 일부로 채택
4조	표준	WTO TBT 협정문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를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Guarantee'의 의미보다는 '강한 권고(Strongly Recommend)'에 근접한 표현으로 간주)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의 협력 장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연관 표준 활용

18) 유새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4.

		국제표준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며 ISO, IEC, ITU, CAC 등에 의한 국제표준을 포함시킴
5조	기술규정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미수용 시 상대국 요청에 따라 사유 설명 의무화
6조	적합성 평가절차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합의, 상대국 적합성 평가 기관 자격 부여의 인정 절차 채택,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인정,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기관간 자발적 약정 체결 가능, 공급자적합성선언 수용) 상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적합성 평가절차 비용 및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협력
7조	투명성	제안된 표준, 기술규정 등에 대해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상대국의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긍정적 검토 채택된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즉시 공지
8조	협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에 조인 제공, 표준, 시험 및 인증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협력, 적합성평가기관 상호 인정, 국제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역량 강화,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지역·국제기구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 WTO TBT 위원회 및 관련 국제·지역 포럼에서의 소통 강화; TBT 협정 이행 촉진 등)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 내 운영 및 설립 시 협력 신기술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IECEE CB 시험성적서를 양국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로 수용 독려
9조	소비자 제품 안전	소비자 사용 제품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규제 제도 시스템, 위해제품 조치, 사후관리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모범규제관행, 위험관리원칙 개발, 이행 및 집행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10조	이행 협정	적합성평가 협력 분야의 조속한 협상 및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추가 이행협약 체결(합의) 가능
11조	표시 및 라벨링	기술규정이 마킹과 라벨링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허용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마킹과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마킹과 라벨링의 사전등록 및 허

		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고유한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비차별적으로 부당한 지연 없이 발행, 특정 언어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추가 언어사용 금지 불허,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사용을 허용하도록 노력 등)
12조	국경 조치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
13조	TBT 위원회	TBT 위원회 설치 합의 TBT 위원회의 기능(협정 이행, 집행, 점검 및 촉진; TBT 관련 정보 교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비정부, 지역, 다자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MRA 논의 장려; 공동위원회 보고; 동 협정 이행에 관련된 조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 협의 등) 매년 최소 1회 위원회 개최 TBT위원회 조정기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14조	정보교환	타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 유인물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 자국의 필수적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제외
15조	분쟁해결의 미적용	FTA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음

자료: 유새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6-7.

한·중 FTA TBT 협정문은 양국이 각각 기체결한 TBT 협정조항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며, 비용 및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대중국 수출 시 직면하는 기술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중국에 기진출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표준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 공동 기술협력 · TBT 협의체 구성·이행 등 양국 공동협력 및 투명성 등의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안되거나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유인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하여 이에 대한 상대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되고 있다. TBT 협의체 구성 및 이행을 위해 양 국간 제기되는 TBT 이슈를 신속히 처리하고 양국간 협정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한·중 FTA/TBT 협정 평가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타결 선언 이후 3개월 만인 2015년 2월에 가서 명되었고, 이어서 6월 1일에 본 서명을 마쳤으며,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5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식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금명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① 가서명(영문) → ② 협정문 번역 → ③ 법제처 심의 → ④ 차관회의 → ⑤ 국무회의 → ⑥ 대통령 재가 → ⑦ 정식 서명(영문, 한글, 중문) → ⑧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⑨ 국회 비준동의 → ⑩ 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FTA TBT 협정은 15개 핵심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보다 발전된 용어 사용과 신규 조항 채택 등 당초 예상보다 진일보한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한·중 FTA TBT 협정에서는 양국의 기존 FTA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채택하여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수출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CCC 라벨 구매 및 등록 절차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표시 및 라벨링’ 조항을 신설하여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영구적 라벨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을 통해 양국간 IECEE CB 성적서 수용을 독려함으로써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증 요건을 최소화하며, ‘국경조치’ 조항은 시험용 시료 통관 역류 사례를 줄여 수출 시간 및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내 주요 조항에서는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는 ‘may’의 표현을 선정한 반면, 한·중FTA TBT 협정문 내 주요 조항의 경우 구속력을 지닌 ‘shall’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등 양국간 TBT 협정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양국은 동 TBT 협정을 계기로 일부 산업(품목)에 대

한 MRA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중 FTA TBT 협정 내용의 국제표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에 비해 다소 미흡함이 있다. 국제표준 사용에 있어 우리나라는 대체로 WTO TBT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효과적’인 경우도 국제표준 사용 거부 사유로 인정하는 등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 협력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중 FTA TBT 협정에 중국 측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제·개정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번 한·중 FTA에 반영되는 등 투명성 조항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채택되었다.

중국의 WTO 통보문 건수가(1995~2014년 누적) 총 1,115건으로 전체 회원국들 중 4위를 기록하는 등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정 건수 증가로 주요 교역국 수출입업계에 기술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 TBT 협정문 중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 제·개정에 대한 상대국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WTO TBT 통보문에 대해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중국 측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응답 및 회신으로 ‘투명성’ 조항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완장치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對)중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제고를 위해 TBT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지역별 TBT DB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시행 중인 인증제도 요건 충족을 위해 과도한 시간소요 및 비용 투자가 대중 수출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성별·권역별로 각기 다른 기술규제정책 및 인증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보습득에 용이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 FTA TBT 협정에 양국 내 인증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치 및 중복인증 방지를 위한조항이 미비한 관계로 향후 인증제도 불일치 또는

중복 인증 등이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TBT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국 내 지방정부에서 신설한 일부 기술규정과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의 불일치로 인해 해당지역으로 수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WTO TBT 위원회에 제6차 3년 주기 검토 보고(Triennial Review)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품목별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규제 리스트 확보하여 기업설문조사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대(對)중 수출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규제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규제정책(예: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기술표준 및 법규, 운용현황 등) 등을 조사와 동 경우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해당 사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위원회를 통한 양국 협력 도모를 위해서 양국 TBT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규정 또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있어 국가기관간 MRA 또는 인증기관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중·뉴질랜드 FTA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측 인증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 기반이 마련된바, 시험성적서 MRA 추진 등 시험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용품, 자동차,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CCC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⁹⁾

19) 유세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8-20.

제3장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현황 분석

제1절 중국의 TBT 정책방향 및 전망

1. 중국의 TBT 정책 방향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신규 기술규제 도입 및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 가운데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국가표준이 수정 또는 제정되어 왔으며, 매년 그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신소재, 바이오, 기능성 섬유 등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되고 있다. 2007년 중국 섬유산업협회에 의하면, 향후 5년 간 중국 섬유 업계는 신소재 표준, 바이오 섬유 표준, 기능성 섬유 표준, 중점제품 표준을 중심으로 약 140개의 새로운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며 2000년 이전에 제정된 표준 300여 개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²⁰⁾

최근 주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기술 규제 및 표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적합성평가 표준체계의 수립을 위해 2003년 “전국 인증인가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적합성평가의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제표준 업무 대응팀을 마련하여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적합성 평가 표준의 국제 기준 부합도가 2003년 20%에서 2010년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TBT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CCC)²¹⁾가 최근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9년에 중국 정부는 인

20)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 200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00.

21)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 인증에 해

증과정을 간결화하고 인증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이 집행하는 데 편하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등록변경절차 간소화, 검사절차의 유연화, 동일 부품에 대한중복 검사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이하 CCC²²⁾)의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표준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²³⁾)가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양국의 강제인증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범위 결정 ⇒ 인증제도 차이분석 ⇒ 상호인정 방법과 범위 협상 ⇒ 협정문 준비 및 서명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인증제도 개편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무역기술장벽(FTA TBT) 협력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²⁴⁾

중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 에너지 보존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보존 인증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정부기관은 에너지 보존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의 TBT 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TBT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국가질량감

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 CCC 마크를 받아야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22)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종 158개 품목이 해당.
 23) 전기전자국제표준화기구인 IEC에서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인증 국제상호인정 체계
 24)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본격 논의; 제12차 한-중 적합성 평가소위원회 개최,” 2015년 8월 25일, 보도자료.

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을 주무 기관으로 하는 “전국 무역기술조치부서간 연석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외국의 TBT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기업, 협회 등에 배포하고 TBT 관련 웹페이지(www.TBT-SPS.gov.cn)에 게재하며 각종 정보 및 업계 의견을 토대로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TBT에 대해 통상 교섭을 진행한다.

중국의 기술규제정책은 경제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관련 정책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외국의 TBT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²⁵⁾

2. 중국의 TBT 정책 전망

환경정책과 TBT부분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증가 전망되며, 중국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 예정이며,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EU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의지 표명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TBT 통보건수는 현재까지 1건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에 따라 향후 TBT 증가 전망된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강화 전망되며, 교통/안전 분야에서 연비 관련 TBT는 총 8건이며, 2011년과 2012년에 TBT통보는 0건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 총 3건을 통보하며 증가 추세이다.

25) 하태정, 송중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64-65.

산아제한 완화정책과 TBT로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폐지로 영유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안전 및 위생 관련 TBT 증가 전망되며,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완화정책으로 영유아 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 강화 중이다. 2014년 5월부터 수입 유제품 및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 신규 관리 규정을 실시했으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전량 수입금지하였다. 2011년 전까지 영유아제품 TBT 통보 수는 0건이었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건을 통보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영유아 고무젓꼭지, 아기 놀이 울타리, 아기침대, 가정용 놀이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TBT 활용 안전 요건 강화되며 산아제한 완화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증가하고, 안전기준 강화로 향후 영유아제품 관련 TBT 증가 전망된다.

제2절 중국의 WTO/TBT 통보 현황

1. WTO회원국의 TBT 동향 분석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에 제출되고 있는 기술규제 통보문과 특정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보문에는 기술규제의 목적과 품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각국의 기술규제 현황 파악에는 용이하나, 그것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특정 무역현안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WTO TBT 위원회에 통보된 기술규제(TBT 통보문) 통계를 기초로 연도별, 국가별, 목적별 등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 2,935건의 기술규제가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림 3-1>과 같이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1,490건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232건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최고치인 1,629건을 기록하였다. 2014년에는 약간 낮은 1,564건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WTO 회원국들의 신규·개정 통보문은 총 1,564건(신규 : 1,535건, 개정 : 29건)이며, 추가·정정 통보문²⁶⁾은 총 675건 으로 전체 통보문수는 사상 최고치인 2,239건을 기록하였다.

26) 최근 회원국들의 추가·정정 통보문이 급증함에 따라, WTO는 신규(new notification), 개정(revision), 추가(addenda), 정정(corrigenda) 통보문 각각에 대한 정의와 통보문 양식을 규정하여 2014년 6월 24일 회원국에 권고했다(G/TBT/35).

<그림 3-1>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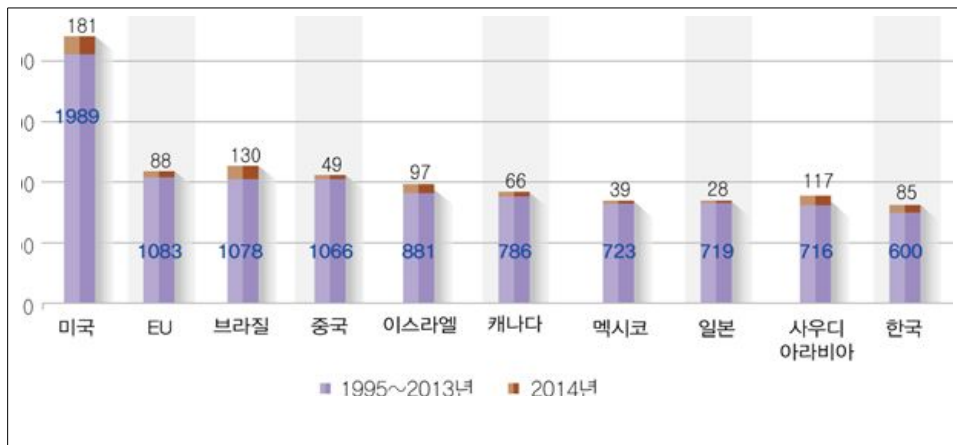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p. 7.

나. 주요 국가별 TBT 통보 건수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통보문을 발행한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3-2>과 같이 1위 미국(1,989건), 2위 유럽연합(EU)(1,083건), 3위 브라질(1,078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10위(600건)로 나타난다.

<그림 3-2>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2014년)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p. 8.

한편, 2014년도 신규 통보문 발행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중동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남미가 24%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아시아가 18%, 아프리카 9%, 유럽 9%, 북미 7%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3-3> 2014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2014년)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p. 8.

2014년 통보건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215건), 아랍에미리트(63건), 쿠웨이트(61건), 카타르(54건) 등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 국가 가운데 4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뒤로 바로 바레인(53건, 11위)과 오만(49건, 12위)이 뒤따르고 있다. GCC 국가는 오만을 제외하고 2013년도에도 모두 통보건수 14위국 안에 들어 있어,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이들 GCC 국가와의 TBT 협력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GCC는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였으나, 2009년 제3차 협상이후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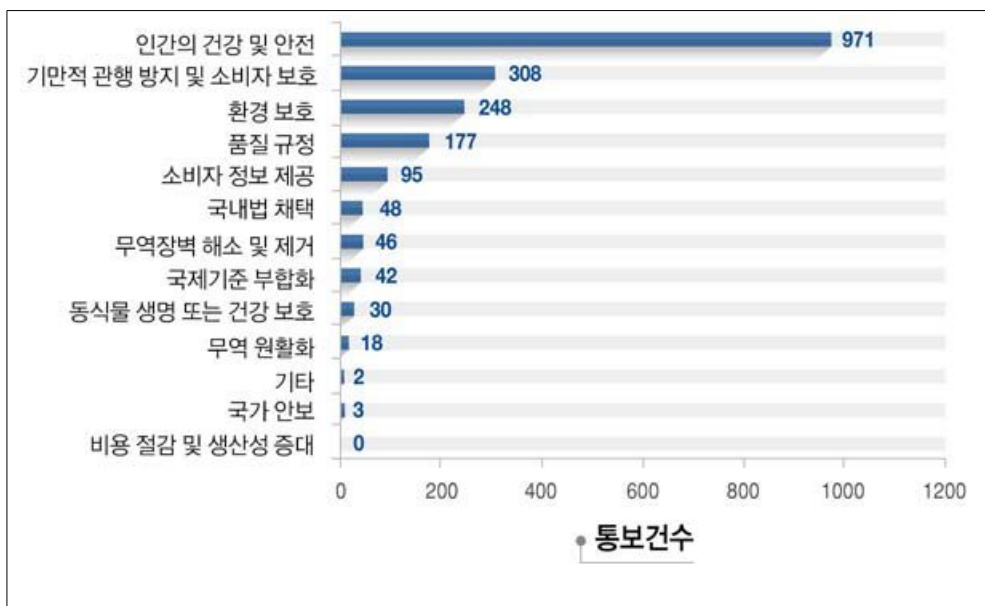
한편, 2014년에는 에콰도르(154건, 1위), 브라질(62건, 8위), 파나마(44건, 14위), 칠레(44건, 14위)등 중남미 국가의 통보 건 수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역과의 협력 관계 개선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목적별 TBT 통보 건수

<그림 3-4>과 같이 2014년 신규 제정된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가 97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308건, 「환경 보호」 248건, 「품질 규정」 177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이 규제를 신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과 같이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BT 통보 중 60일 의견수렴(권고사항)과 같은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TBT 협정 제 2.10조)을 이용해 신규 규제를 활발히 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TBT 통보 목적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와 같은 목적으로 TBT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도국은 품질 규정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3-4> 신규 TBT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2014년)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p. 11.

라.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WTO 회원국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 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이라고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앞에서 다룬 TBT 통보문의 동향은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용이하나, 통보문 중에는 단순한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에 관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실제로 기술규제가 무역상대국의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STC는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연도별로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이 1995년 WTO 출범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까지 제기된 STC는 총 287건으로, 2002~2005년에 다소 감소 추세이다가 이후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총 7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 61건의 STC가 논의되었다.

WTO TBT 위원회에 기술규제 통보가 시작된 초기에 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국들의 TBT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 연도별 신규 및 계속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신규현안	4	6	11	13	5	13	15	20	15	14	12	24	27	32	46	29	43	35	42	47
계속현안	-	-	-	3	6	4	7	12	12	13	12	12	19	26	28	32	32	59	31	38
합계	4	6	11	16	11	17	22	32	27	27	24	36	46	58	74	61	75	94	73	85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p. 13.

한편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무역현안(STC)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1위 유럽연합(EU) (197건), 2위 미국(172건), 3위 캐나다(63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7위(43건)로 나타난다. 이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에 무역장벽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과 관련된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 정보 및 설명 요구」하는 STC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과 관련된 STC 270건, 「불투명성」과 관련된 STC 243건, 「합법성 및 근거 요구」 193건 등이 100건 이상 제기된 현안으로 분류된다. 최근 이러한 주관적인 목적을 가진 기술규제 통보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규제의 무역제한적 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위 4가지 유형이 전체 ST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 집계를 고려했을 때,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제기된 전체 STC가 799건 중 절반이 넘는 건이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로 지적되는 등 무역관련 TBT 장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의 WTO/TBT 동향 분석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WTO TBT 통보문 건수이다. 이는 WTO 각 회원국의 기술규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표준, 인증 및 검사제도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WTO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²⁷⁾

27) WTO/TBT IMS(<http://tbtims.wto.org>).

중국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10건의 무역기술장벽관련 통보문을 제공하였다. 이는 이 기간 전 세계 통보건수 18,648건 중 약 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기간 미국의 1,804건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EU(924건)이나 한국(550건)에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이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전에 이루어진 EU와 한국의 전체 통보문수 각 1,136건과 672건보다도 많은 통보가 이루어졌다.

<표 3-2> 중국의 연도별 WTO/TBT 통보문 건수

(단위: 건, %)

연도	전체	중국	비중
2002	625	15	2.4
2003	897	32	3.6
2004	724	23	3.2
2005	894	107	12.0
2006	1,031	68	6.6
2007	608	97	16.0
2008	1,633	243	14.9
2009	1,961	227	11.6
2010	1,902	76	4.0
2011	1,786	98	5.5
2012	2,200	81	3.7
2013	2,142	93	4.3
2014	2,245	50	2.2
합계	18,648	1,210	6.5

자료 : <http://www.knowtbt.kr/Info/Stats>

특히 2005년 이후 통보건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체 회원국의 통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통보문 건수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기술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기술규제 통보문을 보고하는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국은 무역관련

기술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⁸⁾

품목별 동향은 전 세계 TBT 품목동향과 달리 식의약품 분야 통보문이 현저히 적으며, 중국에서 TBT 통보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전자로 16.2%를 차지하며 이어 화학세라믹 14.8%, 기계 13.4% 순이다.

<표 3-3> 중국 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전기전자	150	16.2%	1
화학세라믹	137	14.8%	2
기계	124	13.4%	3
교통/안전	100	10.8%	4
생활용품	88	9.5%	5
에너지	84	9.1%	6
식의약품	80	8.6%	7
소재나노	49	5.3%	8
건설	34	3.7%	9
농수산물	29	3.1%	10
정보디지철	26	2.8%	11
기타	17	1.8%	12
바이오환경	10	1.1%	13
총계	9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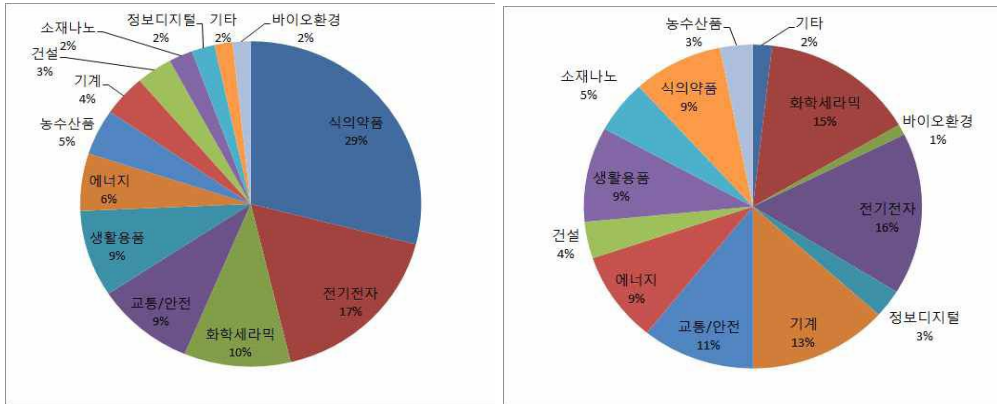
자료 : KOTRA (2014),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Global Market Report」, 14-049, p. 53.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 TBT 통보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의약품 통보문 비중이 현저히 낮고, 기계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전자·화학세라믹·기계부분으로 세계경제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매년 제조업 기반 연평균 11.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지전자, 화학세라믹, 기계 관련 TBT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²⁹⁾

28)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어문화학회, pp. 13-16.

29) KOTRA (2014),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Global Market Report」, 14-049, p. 57.

<그림 3-5> 전세계와 중국의 TBT 품목별 비율 비교



자료 : KOTRA (2014),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Global Market Report」, 14-049, p. 54.

제3절 중국의 TBT 관련 제도 및 사례

1. 중국의 TBT 관련 주요 제도

가. 중국 강제인증제도

중국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e; CCC)의 유래는 중국의 대표적인 TBT관련 규제 제도로서 2001.12.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과정은 2001년 4월 ‘질량기술감독국’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총괄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 인증제도인 ‘CCC’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내용으로는 2003년 8월 이후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CCC’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마크를 위조·도용·변조 등을 통해 수입이나 판매 할 경우 행정처벌 및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으로는 2010년도 23개 분야 172개 품목, 2003년 8월 자동차, 전기 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 지정, 2004년 4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2차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2005. 8 시행), 2006년 12월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인증제도 추가, 2007년 6월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 완구, 금속 완구 및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 인증대상에 추가되었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총 6단계의 절차로 되어 있으며 심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 된다.(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 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

우 90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된다.

CCC 제도의 문제점은 CCC도입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그 전부터 지적돼 온 이중적 인증체계 문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제도 자체는 별 문제 없으나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통상 CCC마크를 얻는데 6개월에서 1년 소요되는데, 그 원인중 하나는 중국이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의 공장 실사 결과 적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자발적 인증제도

중국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 방법』(가칭)을 반포하여 중국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 ‘방법’은 중국의 강제인증(CCC) 및 자발적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의 시행령임(AQSIQ에서 입법하고, CNCA가 집행한다.

적용 범위는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제반 활동(신청, 제품 및 공장 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에 적용된다.

자발적 인증의 범위는 중국의 강제인증(CCC)를 제외하고 중국내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인증제도로 특히 해외인증(KS, KC, CE, UL 등) 등도 포함된다.

중국내 인증기관 설립 요건으로는 인증 전담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한국인 심사원의 경우 임시 중국방문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국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발적 인증제도의 영향은 중국 진출 한국 인증기관의 사업 제한 및 자격 요건 강화로 중국내 인증활동이 어려워지고 운영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내에 인증기관(사무소가 아닌 법인)을 설립해야만 KC 등 인증의 중국내 공장실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중국 진출 한국 심사기관의 경우 KC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내에 인증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전담인력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인증기관은 사실상 없는 것

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인정은 ‘KC’를 비롯한 한국의 인증 심사과정에서는 중국과 달리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성적서)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제품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기관의 인정(성적서)을 수용하고 있다. 또 한국은 인증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차이나 RoHS(China RoHS)³⁰⁾

중국은 2007.3 이후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규제(RoHS)’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다. 중국은 WTO TBT위원회 지적(2005.9)과 일본 등 관련국의 지적을 수용해 중국은 동 조치를 공포(2006.2)한 뒤 발효시켰다.(2007.3)

목적은 EU와 마찬가지로 IT제품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통제 및 감축, 자원 절약, IT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브롬계 난연제(PBDE) 등 IT제품에 포함된 6개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은 함유된 유독물 성분, 환경보호를 위한 사용기한, 회수가능 여부 등을 표시한 라벨이나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해물관리를 CCC 강제인증제도의 전단계인 자발적 인증제도 또는 자기적 합성선언을 의무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제품의 생산 및 설계과정 중 환경보호 및 재활용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였다.³¹⁾

중국의 통제 방법은 EU의 RoHS와 유사하지만, EU의 RoHS 대상 품목에는 있으나 누락된 품목(예를 들면 전자레이더, 전자측정장비, 전자재료, 전자 유닛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산업표준이나 국가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

30) 장현숙, 조성대, 김우중 (2010),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 9, No. 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3-5.

31) 이찬우 (2012),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p. 140.

적되고 있다.

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CNCA의 CCC 인증을 받을 때 SAIQ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not specified) 국제 기준이나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³²⁾

중국은 동 규제 대상과 관련하여 공포된 내용을 WTO TBT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06.11 중국은 3개의 산업 기준(<독성화학물질 제한에 대한 요구>, <오염통제 지표 및 요구>, <사용제한 화학제품 심사방법>)을 공포했으나 이를 TBT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2007.3 TBT위원회에서 지적되었지만 중국은 이 3개 기준은 자발적 지적 내용이므로 TBT에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뒤 중국의 <우선 통제 목록>에 있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CCC인증을 적용하는데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열린 2008.3월과 7월에 열린 TBT위원회와 2008.11 열린 중국 TRM에서 중국 대표는 <우선 통제 목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질문은 TBT문의담당 부서와 기타 통로로 알아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차이나 REACH

중국은 EU가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新化學物質環境管理方法))을 실시하는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의견수렴과 개정을 거쳐 '10.1 동 법안 개정안을 중국 국무원에서 통과시켰다.

중국은 '01년 WTO 가입 이후 국제 사회와의 통합을 위해 '03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후 EU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실시하자 EU REACH와 유사한 수준의 개정안을 '09.5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는 운영 및 관리 면에서 EU REACH와 유사하며,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며 미등록시 역내시장 진입금지, 신고 화학

32) 일본 METI(2010) 보고서.

물질이 환경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보를 담은 위해성평가보고서와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 REACH와 달리 신규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등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은 총 45,355개로, 국내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원료나 제품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원가상승 압박 가중 예상된다.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으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는 한·중간 상호인증에 관련되므로 FTA 협상 과정에서 상호인증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주요국도 EU의 REACH에 상응하는 관리지침을 작성,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보완하여 FTA에 협상시 상호인증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³³⁾

2. 중국의 TBT 관련 주요 사례

가. 독성화학물질 수출입에 대한 차별적 부과

독성화학물질 수출입 관련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차별적인 부과금을 요구, 역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와 기업은 중국이 <엄격 제한 독성화학물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등록 때마다 관계 당국에 10,000달러를 납부하고 <독성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같은 물질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은 화물 도착시마다 2,000달러를 납부하며 동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치가 외국기업에 대해

33) 정환우 (2012), “한·중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 11, No. 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5-23.

차별적인 대우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차별적 대우의 결과, 외국기업은 또한 관련 화학물질을 처분할 때마다 세관에 통과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에 중국기업이 관련 화학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할 때에는 이러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 업계는 이에 따라 경제부, 통상산업부 등을 통해 외국기업에만 비싼 등록 동 사안 관련 내용은 일본 METI(2010) 보고서를 참조 비를 납부해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규정에 비취본 문제점으로 WTO상의 기술 규제, 내국민 대우, 수입허가절차, 통보 및 시간제공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용 화학제품과 농화학 제품은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입시 이러한 등록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는 TBT협정 범위내에서 기술적 조절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수입 등록과 허가는 각 계약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합산하여 비용을 부과시킬 경우 수입 등록 증명과 수입 증명에 필요한 비용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이는 내국민 대우 규정과 무역제한 행위 금지를 규정한 TBT 협정 2조에 저촉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적 대우와 과도한 비용 징수는 GATT 및 수입허가절차 협정에도 저촉된다.

중국은 이 개정 <독성 화학물질 제한 리스트>를 WTO/TBT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코멘트 기회를 주지 않고 있고 수정본의 공포와 강화에 적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TBT협정 제2조에 저촉되는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동 사안은 중국의 TBT 관련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시하면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수출입 절차 규정의 운용 등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분야 협상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협정)

를 수출입 업무에 적용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임을 감안, FTA 협정 이후의 협정 실행 및 상설 협력추진(집행)위원회 구성 시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³⁴⁾

나. 보안시스템에 대한 자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

중국은 주요기관 보안시스템에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MLPS(다중보호계획, Multi-level Protection Scheme) 실시하고 있다. 2007년 6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금융관련기업, 통신사, 발전소, 교육기관, 병원 등을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관(3등급 이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중국산 보안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관의 보안등급은 시스템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시스템을 사용(주요부품에도 중국기술 반영 필수)해야 하고, 소스코드, 암호화키 및 기타 영업 비밀을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IT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정부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관(3등급 이상)의 사업자 공모에는 MLPS가 적용되어 외국기업들이 민간 사업자 공모 참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재 사업자 공모 시에만 적용중인 MLPS 규제를 상업분야에까지 확대하면 중국에 진출한 정보보안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동 규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MLPS는 2011년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상정되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보안기업 강국인 미국이 미국·중국 통상위원회(JCCT meeting)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은 2013년 중반 MLPS 개정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 2014년 4월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

34) 정환우 (2012), “한·중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 11, No. 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5-16.

았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중국 정부의 해외 IT 기업들에 대한 차별, 정보보안테스트 및 상업제품인증에 대한 의무화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다. 의료기기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 및 등록 요건

중국은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인증체제와 자국기업에 비해 엄격한 등록 요건을 부과하여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국제인증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인정하는 국제표준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인증을 취득한 상품도 중국 국내 인증 절차를 중복으로 밟아야 한다. 중국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규격인 IEC 60601-1의 2판 인증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최근 버전인 IEC 60601-1 3판 인증을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기업들은 국제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체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체계가 발생된다.

또한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는 자국에서 생산된 의료기기에 비해 까다로운 등록 요건을 요구하며, 모든 수입의료기기는 CFDA7)를 통해 허가를 받는데 비해, 중국 내 생산 의료기기의 경우 3등급(최고 위험 등급) 의료기기만이 CFDA 허가대상이다.

1등급(저위험) 의료기기는 관할시(市)의 의약품식품감독관리 기구, 2등급(중위험) 기기의 경우 관할 성(省)의 의약품식품감독관리 기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수입 의료기기의 승인을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선(先)등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기업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중국 수출시 중국내 대리인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한 해당 의료기기의 유통허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안정성 및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중복 요구로 수출업체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품수명이 짧은 제품의 경우 시장 진출 지연에 따른 피해도 발생된다. 2·3등급 의료기기 등록 시 CFDA 지정 전문 검사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와 중국 내에서 시

행된 임상시험 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다. 1등급 의료기기에 한해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인정되며, 특히, 체외 진단제의 경우 2등급 이상 제품은 2곳 이상, 3등급의 경우 3곳 이상의 임상시험기관에서의 중복시험을 요구해 對중국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증가된다.

첨단 기술 및 미용 관련 의료기기는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여 제품수명이 짧기 때문에 허가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기기 중 특히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국제관행과 달리 고위험 의료기기 (3등급)으로 엄격히 분류되어 고비용 및 불필요한 중국 내 임상시험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생산자들의 부담이 크다.

단, 최근 일부 초음파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의료 엑스레이기기, 의료용 엑스레이보조기기 및 부품, 의료용 방사선 보호 장비 및 장치 등의 영상진단기기의 분류등급이 완화되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의료기기 관련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이 높아 여전히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3월 31일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체 소재국가 선(先)등록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완화(단순신고 허용)되었지만 의료기기 등록신청에 대한 규제는 강화(의료기기등록을 법인에만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기기등록증·생산허가증·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성과를 보였지만, 재등록 시에도 초기 등록절차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라.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

중국의 화장품 관련 허가는 엄격한 편이며 실제 위생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수출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CFDA는 관련 사법권을 갖기 시작한 2008년 이후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CFDA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발표하여 사용가능한 성분을 고지하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수출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화장품은 중국으로의 수입이 불가하므로 수입허가를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해 수출국 내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화장품 관련 허가 절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의제로 상정되고 있다.

한편,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과 상이한 위생허가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허가 취득에도 장시간 소요되며 관할 성(省)의 의약품식품관리기구에서 허가 받는 중국 제품과 달리 수입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도 CFDA의 허가 필수이며,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 취득의 법정 소요기간은 90~100일(특수용도화장품 120~160일)이나 실제 기간은 6개월(특수용도 화장품 1년) 이상 소요된다.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의 주기가 짧아 위생허가 취득 지연으로 판매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수출기업에 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미백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를 변경하며 새로운 인증 취득을 요구하여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중국 정부가 미백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 일반화장품에 비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험 및 서류제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시간(7개월→12개월)과 비용(1만 5천위안→3만 5천 위안) 부담이 증가되며, 기존 인증제품의 경우 미백기능 인증을 위한 추가 검사가 요구되고 이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각각 5개월, 1만 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된 인증을 받지 못한 미백 화장품은 수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판매 및 생산이 금지되며, 제품포장 및 마케팅에 미백기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화장품 인증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미백효과를 표시할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상품만이 생산 및 판매 가능하다.³⁵⁾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 기업 B社は 기능성화장품 전문 업체로 북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1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대상국 중 중국을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지적했다.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제한 중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성분 리스트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없는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B社は 인체유래 줄기세포가 포함된 노화방지용 화장품을 수출하려 했으나 동 원료는 중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대체 성분 연구를 진행해야했으며, 그 결과 노화방지기능이 있는 다른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이한 기준에 따른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중국 CFDA는 서류작성 시 요구기준이 다른 국가들과 달라 번거로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화장품 성분을 표시할 때 복합체 표기를 인정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위생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서류 및 기술 시험 등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타와 같은 사소한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문제 삼아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려된 건을 다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통과 했던 절차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동일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2~3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입화장품에 대한 쿼터 존재 화장품 위생허가 담당기구인 CFDA는 매년 발급 가능한 화장품 수입허가 건수가 정해져 있어 제한 수량 이상으로 허가하지 않고, 허가 신청 건수가 제한수량을 초과한 신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5) 이혜연, 제현정, 서은영 (2014), “기술규제장벽 넘어 수출길 닦아야: 최근 중국, 미국, EU의 기술규제동향,” 「Trade Focus」, Vol. 13, No. 4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9-16.

제4장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제1절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

1.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

TBT협정 규정에 따라서 회원국 간 TBT관련 사안은 위원회에서 처리된다. 회원국내에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비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기관에도 동일하게 협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규제의 제정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 정치제도, 국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와 관련 있는 중대 사항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고 지방정부가 지방 상황에 따라서 인민대표대회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자연조건, 경제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등 차이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술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역간, 산업간의 기술규정간 충돌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표준 제정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표준, 산업표준 및 지역표준은 서로 차이점이 많이 있고 각 표준을 서로 교차, 대립, 반복된 사항이 많다. 그 절차 또한 까다로워 표준화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2.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

기술규정과 표준의 적합성평가절차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적합성평가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제인증제도나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의 경우 중국의 검사 기관과 적합성평가기관에만 인증 및 검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의 경우 적합성 평가 활동은 표준화보급을 위하여 도입되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특별한 업무 기능을 이용하여 이익 추구형 적합성 평가가 행해지고,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인하여 적합성 평가활동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⁶⁾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보일러와 압축용기 제조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규제와 2011년 정보보안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기술규제에 대해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극히 낮고 선진국의 제도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 성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표준제도에 있어서 현재 중국의 국가표준내의 8,387건은 국제규격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중국 총 국가표준의 43.5%에 불과하고 그중 ISO/IEC 규격채용은 6,159여건이지만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규격이 1,878건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IT 제품에 의한 오염 통제를 목적으로 실행된 China RoHS는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규제(RoHS)를 기반에 두고 이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통제 방법은 EU의 RoHS와 유사하지만, EU의 RoHS 대상 품목에는 있으나 누락된 품목(예를 들면 전자레이더, 전자 측정 장비, 전자재료, 전자유닛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산업표준이나 국가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CNCA의 CCC인증을 받을 때 SAIQ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고 국제 기준이나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 최근 중국의 TBT 통보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많이 받는 분야가 IT 산업이다.

중국은 자국의 I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교역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독자적 무선랜 암호화 표준인 WAPI 추진이 그것이다. 이는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암호표준으로 중국은 미국이

36) 박혜숙, 윤인찬, 조남호 (2002),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25권, 제6호, p. 66.

주도한 무선랜 암호표준 802.11을 도입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독자적 표준을 제정 의무화 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강제도입을 유보한 중국은 국제표준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WAPI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4. 투명성의 부족

TBT협정 부속서3에서 회원국들이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하여 통보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부속서 제C항에 따라 “일반규정에 대하여 수락하였거나 이규정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위원회 정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³⁷⁾ 또한 제J항에서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6개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 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공표한다.”³⁸⁾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시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우려사항 중 하나가 보조금을 포함한 중국의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당국 등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접근의 제한, 언어 문제, 정보 통보의 불충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여타 회원국, 개인, 기업의 접근이 가능한, 공표된 무역 관련 법률, 규정 등의 조치만 시행할 것이며,

타 회원국이 요청하면 관련 법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공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술규제와 표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통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표준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표준이 중앙입법 및 지방입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서 실행기구도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대로 다른 회원국한테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비정부 기관에서 제정된 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문서를 내부만 유통하여 외부로 통보

37) TBT Agreement Annex 3 C. “Standardizing bodies that have accepted or withdrawn from this Code shall notify this fact to the ISO/IEC Information Centre in Geneva”

38) TBT Agreement Annex 3 J.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the standardizing body shall publish a work programme containing its name and address, the standards it is currently preparing and the standards which it has adopted in the preceding period”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표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중국은 TBT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 현안을 보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TBT 관련 규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다. 투명성 부족 문제는 제정 또는 개정된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 합리적인 적용기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한다.³⁹⁾

39)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p. 13-16.

제2절 한·중 양국간 TBT 쟁점 및 대응사례

1. 한·중 양국간 TBT 쟁점

가. 제품안전 관련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에 따른 제품안전관련은 한국이나 중국 양국가가 WTO/TBT위원회에 통보문을 가장 많이 보낸 목적별 사항이다. 향후 인체 안전의 인식이 더욱 커지면서 기술규정의 제정도 세분화 되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규정이 제정되는 목적중하나에는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은 양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유는 양국가의 기술규정이 상호 다르며 적용하는 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도 보호무역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무역장벽이 된다. 또한 중국의 제품안전과 관련된 기술규정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일부는 국제방식과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방식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유사한 다른 국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최근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식품 등 안전문제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표준의 요구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저렴한 중국산 장난감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EU나 미국의 기술규정을 참고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중국제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환경보호관련

중국은 환경오염 유발제품 또는 관련기술에 대한 규제성 입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성 입법조치는 생산은 물론 금융, 수출부문등에 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가 많고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과징금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수출 및 판매금지 대상이 되어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수있는 제품개발에 박차를가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수 있는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중국시장 뿐 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하여 환경관련설비 및 기술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배양 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도 환경보호를 환경 규제회피방안을 마련하는 피동적 인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환경규제정보 및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전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 국제표준관련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이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 국내기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 초기에는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원하였다.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이 향상 되어 자국의 기술표준의 제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표준은 외국표준을 참조 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표준의 참가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의 국제표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국제표준화를 선점 하는 것이 중요 하다. TBT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아직 신설되지 않은 국제표준에 대해 국내 기술규정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자동차의 경우 한·미FTA를 참조하여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한·중양국의 자동차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작업반은 자동차 관련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국과 그 영역의 이해 당사자 간에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기술표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여건을 마련 해야 한다. 비단 중국과의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위해서도 국가 표준화체계를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체계를 재검토하고 표준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호한 내용은 객관성이 있도록 수정 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과 부합되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규제 기준치 시험방법에 논란이 있을 경우, 선진국 및 국제표준과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적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⁴⁰⁾

국제표준 활동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표준경쟁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표준을 채택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 할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계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라. 투명성 제고관련

한국과 중국 양국가가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한·중양국이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보다 신속한 통보효과를

40) 하태정, 송중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38-139.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새로운 기술규제를 통보할 때 WTO/TBT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이 후에 회원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교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첫째방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국이 WTO/TBT위원회에 통보문을 발송할 때 협상당사국에도 동시에 그 내용을 보낼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웹사이트를통해의견을교환할수있게하여쌍방의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보가 불완전하여 상호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보문 작성요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보문 작성 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기존의 통보문의 내용이 수정 되거나 추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상대국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지역별TBT 통보자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교역량이나 품목의 통계가 다를 수가 있어, 중국의 지역 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규제의 재·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한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으면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역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이 길면 상대국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호 이해가 충돌하여 무역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마. TBT 관련 정보의 수집관련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동향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술규제의 실태와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국내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규 기술규제가 국제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 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분석 및 판단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 할 경우, 정당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제시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기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TBT 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통상부 주중대사관 및 대한 무역투자 진흥 공사를 통해 중국의 산업보호 조치 및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⁴¹⁾

2. 중국 TBT 관련 한국의 대응사례

가. 중국, 냉온수기 에너지 효율 규제

2013년 12월, 중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냉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하였다.

동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냉온수기는 에너지 효율등급(1~3급)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했다. 그러나, 냉온수기 시험방법에서 온수 온도를 90℃로 명시되어 있어, 85℃로 온도를 제한하는 제품의 수출이 불가하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규제안에 대한 우리나라 온수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공식서한(2014년 2월)을 통해 시험 온도 조건을 8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표준 채택일로부터 9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제공해 줄 것을 청하였고, 2014년 WTO TBT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자협의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중국은 시험온도 조건은 중국 국가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 변경이 불가하고, 시행 유예를 1년 제공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업계는 동 규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41) 서민교, 김희준 (2012),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4권, 제4호, pp. 506-510.

나. 중국, 가전제품 비금속재료 규제

중국은 2012년 8월 6일(한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부터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을 받는 가전제품의 비금속재질 시험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개정 사항을 WTO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전제품에 실시하던 내열·내연 시험이 비금속재질 시험으로 대체되고, 시험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으며, 기존에는 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요건제한이 없었던데 반해, 개정 후에는 지정 인증기관,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소, 제조사 시험소만 시험이 가능 하도록 제한하였다.

기업이 CCC 인증을 획득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 1회 공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심사시 기업은 ‘비금속재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제한이 없어 기업이 자체 시험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시험기관에 시험을 위탁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지정 시험소를 통하거나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자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C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전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등 총 18종에 달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對중국 수출액이 적지 않은 분야였다. 우리나라는 동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2014년 5월 공식서한을 중국측에 송부했다. 공장 사후심사시, 제조사 시험성적서 수용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한국의 공인 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4년 11월 제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재차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하였다. 중국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제

2012년 12월, 중국은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제도를 201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WTO TBT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로운 라벨링 요건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기존 중국 국가표준과의 부합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중국은 동 규제의 시행을 계속 유보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17」을 WTO에 통보하였다. 이 통보문에는 오버라벨링(기존 라벨위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 금지,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스티커 라벨링이 금지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과 함께 WTO TBT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의 요청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효능평가 검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효능평가 대상 항목의 명확한 설정, 제3자 인증 대신 수출업체가 자율인증, 효율적 대응을 위해 24개월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속 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EU, 캐나다, 일본 등과 공조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대응할 계획이다.

라.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

2013년 12월, 중국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동 중국 국가표준(GB)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시험항목 및 기준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업체의 이중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라벨 언어를 중문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영문, 숫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명칭,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중국 측에 공식서한(2014년 2월)을 보내 국제표준과 상이한 시험항목에 대한 부합화와 영문 사용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4년 WTO TBT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우리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GB가 국제표준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개정중인 IEC 62133(2016년 6월 발표 예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라벨에 영문표기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우리 정부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수출액이 상당한 만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⁴²⁾

4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TBT 중앙사무국, p. 82.

제3절 한국의 중국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1.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에 관련된 기술규제부분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분화 되고 엄격해 질 것이다.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에 따른 제품안전 관련이 한·중 양 국가가 WTO/TBT 위원회에 통보문을 가장 많이 보낸 목적별 사항이다. 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은 무선랜 암호와 표준(WAPI),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규제 (China RoHS), 정보보안에 대한 규제, 보일러와 압축용기제조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은 양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유는 양 국가의 기술규정이 상호 다르며 적용하는 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도 보호무역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무역장벽이 된다. 또한 중국의 제품안전과 관련된 기술규정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일부는 국제 방식과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방식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다른 국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³⁾ 기업은 EU나 미국의 기술규정을 참고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표준 제정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표준 선점을 위한 국가 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표준개발이 시급하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진기업의 기술표준을 지속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과중한 기술료 부담이 필연적이며 장기적으로 한계를 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자 기술력을 보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개별 기업차원의 인식 전환과 투

43) 서민교, 김희준 (2012),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4권, 제4호, p. 507.

자 확대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기업 표준화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기업이 표준개발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⁴⁴⁾

전기전자 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국제표준 선점은 기술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제표준은 기술무역장벽 협정문에 근거하여 관련된 내용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술무역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 및 기업적인 차원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면 국내 산업화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시간 단축 및 시장 확대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⁴⁵⁾ 특히 국제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및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녹색산업에서의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⁴⁶⁾

또한, 중국은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하여 법규의 마련 및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규제의 개념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전문담당기관 및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WTO TBT 협정 부속서 1에 따르면 기술규정과 기술표준을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기술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규로 기술법규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중국은 교역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기술규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기술규제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폐지 및 수정되어 실제 수요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⁴⁷⁾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의 인증기간 단축을 위해 CB 보고서 활용하며 중국

44)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38.
 45) 장용준, 남호선,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연구자료 1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64-65.
 46) 배은희 (2009), “무역상 기술장벽 [TBT]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소기업활성화 정책토론회, pp. 7-15.
 47)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 87.

에 샘플 발송 시, 세팅이 복잡한 제품이나 조립이 필요한 제품은 별도 인력을 시험소에 파견하거나 또는 상세한 설명을 중국어 서면으로 송부한다. 샘플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추가 샘플을 보내 시험소에 재시험 요청을 한다. 샘플에 문제가 없으나 EMC 시험설비의 특성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험 의뢰를 한다. 재시험 의로 시, 같은 샘플로 재시험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새 샘플을 발송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CB 보고서 문제의 경우, CB 발행기관을 통해 교섭 및 보고서 수정은 제품 샘플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를 수정한다. 기본적으로 시험소에 대응하고 시험소에 대응을 의뢰할 경우, 확실하고 상세한 대처방법을 중국어로 작성해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중국 인증기관 또는 시험소 측의 자료 분실의 경우 재송부 시는, 첫 회 공장심사에서의 부적합 처리의 경우에도 재송부를 한다. 가능한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시정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다면 조기에 제출하여 검사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인가 취득 전에는 제품 또는 명판에 CCC 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자료로 제출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⁴⁸⁾

2. 투명성 제고관련

한국과 중국 양 국가가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한·중 양국이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보다 신속한 통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새로운 기술규제를 통보할 때 WTO/TBT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이후에 회원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교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첫째 방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국이 WTO/TBT위원회에 통보문을 발송할 때 협상 당사국에도 동시에 그 내용을 보낼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쌍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보가 불완전하여 상호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보문 작성 요령

48) 박백수, 조서원 (2015), “한·중 FTA에 따른 무역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 방안 I: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BSC Report 311-15-010,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pp. 9-10.

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보문 작성 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기존의 통보문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상대국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지역별 TBT 통보자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교역량이나 품목의 통계가 다를 수가 있어,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규제의 재·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의견 수렴기간이 짧으면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의견 수렴기간이 길면 상대국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호 이해가 충돌하여 무역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기술규정 변화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 및 상호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3. 중국 TBT 관련 정보의 수집관련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동향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술규제의 실태와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국내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규 기술규제가 국제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및 판단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할 경우, 정당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제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기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TBT 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통상부 주중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중국의 산업보호 조치 및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관련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유용한 답변을 위해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1997년에 WTO/TBT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처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하나의 통합된 질의처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절차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질의처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식품의약품, 기술표준원으로 질의처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해당국가의 특정무역현안의 제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의 질의처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⁴⁹⁾

5. 중국 기술규제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국제표준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간 기술교류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술적, 법률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대국의 TBT 의 분석 및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로 구성된 TBT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EU 의 경우 정부 조직으로 설립 하고, TBT 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⁵⁰⁾ 또한, 중국과의 교역시 발생한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능력과 부처간 조정을

49) 서민교, 김희준 (2012),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14권, 제4호, p. 510.

50) 김태형, 황성분 (2013), “한·중 FTA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수행 할수 있는 리더십과 소통능력, 당사국과의 원만한 협상능력 및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을 통해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⁵¹⁾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p. 19.

51)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49-150.

제5장 결 론

본 논문은 한·중 기술무역장벽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무역기술규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BT 위원회에 통보되는 무역기술규정의 추이분석 및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규정의 TBT 협정 위반 여부, 즉 무역장벽으로 활용 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이 있는 경우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쌍무간 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화 된 통합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2008년 TBT중앙사무국을 출범시켜 국내 TBT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규제 업무는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대응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TBT 중앙사무국을 중심으로 TBT 업무와 대응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기업과 산업의 인식의 확대와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수출 상대국의 무역기술규제가 한국의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시 애로점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인식부족과 업종별 산업별 참여가 저조하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제공된 교역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인지하고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수출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RoHS, WEEE, REACH 등 선진국의 합법적인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정밀 측정기술 개발의 확대와 범부처 차원의 국가측정표준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원천표준의 확보를 위해 국가인프라인 측정 기술의 R&D 투자의 확대가 중요

하며, 적합성 평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적합성평가 기관의 측정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적합성 평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술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무역장벽에 대한 중국 시장 및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비 지급 확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안전제품 선호성향이 강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품의 표준이 강화 되고 있으므로 자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자국의 표준을 국제기준으로 확정하여 유리한 경쟁 환경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급변하는 기술 규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술변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에 그 기능을 맡겨,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 김태형, 황성분 (2013),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 남상열 (2005), “무역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정책연구 0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백수, 조서원 (2015), “한·중 FTA에 따른 무역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 방안 I: 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BSC Report 311-15-010,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박혜숙, 윤인찬, 조남호 (2002),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25권, 제6호.
- 배은희 (2009), “무역상 기술장벽 [TBT]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소기업활성화 정책토론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TBT 중앙사무국.
- 서민교, 김희준 (2012),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 200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염성보 (2012),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새별 (2015),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석 (2012), “기술무역장벽이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우 (2012),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중사회과학학회.

- 이혜연, 제현정, 서은영 (2014) , “기술규제장벽 넘어 수출길 닦아야; 최근 중국, 미국, EU 의 기술규제동향,” 「Trade Focus」, Vol. 13, No. 4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장용준, 남호선,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연구자료 1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용준, 서정민 (20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 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통학회.
- 장현숙, 조성대, 김우중 (2010),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 9, No. 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환우 (2012), “한·중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 11, No. 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조용방 (2011), “한국 및 중국 무역장벽의 비교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숙 (2015),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정책연구 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KOTRA (2014),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Global Market Report」, 14-049.